|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민사심판 감독절차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적용하는 데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민사심판 감독절차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적용하는 데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5년2월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발표하며, 2015년3월15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2월16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각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수호하며, 민사안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 사항을 규범화하고, 심판감독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근거하고 심판업무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상급 인민법원은 엄격하게 민사소송법 제200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심사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을 재정(裁定)해야 한다. 재심지령을 이유로 재심시작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이 불복신청(申訴)을 반복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 재심을 지령하도록 규정되지 않은 안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재심토록 지령해서도 안 된다.**제2조** 당자자의 재심신청에 의해 재심을 재정한 안건은 일반적으로 재심을 재정한 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4)항,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재심을 재정한 경우; (2)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이 1심 법원에 의해 내려진 경우; (3) 당사자 일방의 인원 수가 많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 (4) 심판위원회 토론을 거쳐 결정된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안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되,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2관에 따라 재심을 재정하는 경우, 상급법원이 직접 심리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 제2조의 재심지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급법원이 직접 심리해야 한다. (1) 원 판결, 재정이 원심 인민법원의 재심 심리 후에 내려진 경우; (2) 원 판결, 재정이 원심 인민법원 심판위원회 토론을 거쳐 내려진 경우; (3) 원심 심판인원이 이 안건을 심리할 때 수뢰, 사익도모, 법을 왜곡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4) 원심 인민법원이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5) 통일적인 법률적용 및 재량권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원심 인민법원에게 재심하도록 지령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제4조** 인민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심리하다가 원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단, 원심 인민법원이 기본 사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안건을 돌려보내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 상급 인민법원은 기본사실 불명확을 이유로 원심파기환송을 할 수 없다. **제5조** 인민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심리하다가 1심 인민법원에 아래와 같은 엄중한 법정절차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관 제(4)항 규정에 따라 원 판결 취소를 재정하고 1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토록 할 수 있다. (1) 원 판결에서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의 참여를 누락시킨 경우; (2) 당사자가 소송 행위능력이 없는데 법정 대리인의 대위소송을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3) 합법적인 궐석재판 통보 없이, 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 경우;(4) 심판조직 구성이 합법적이지 않았거나, 반드시 회피(回避)해야 하는 심판인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원 판결, 재정에 소송 청구가 누락된 경우; **제6조**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재정하는 경우, 재정서에 재심지령 또는 원심파기환송의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제7조** 재심 안건은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위주로 하여 심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재심청구를 제기한 경우 합쳐서 함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재심청구가 원심 소송청구에서 벗어난 경우 심리를 하지 않되, 별개 안건의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에게 별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원심파기 환송하여 재심하는 안건은 당사자의 원 소송청구를 위주로 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청구 변경 및 증가를 신청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관한 해석》 제252조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원심에서 주장했던 사항이나 제출했던 증거, 그리고 제시했던 변론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제9조** 각급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에 대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으로 심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했던 사법해석 중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审判监督程序严格依法适用指令 再审和发回重审若干问题的规定**《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审判监督程序严格依法适用指令再审和发回重审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5年2月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4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3月15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2月16日 为了及时有效维护各方当事人的合法权益，维护司法公正，进一步规范民事案件指令再审和再审发回重审，提高审判监督质量和效率，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结合审判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上级人民法院应当严格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条等规定审查当事人的再审申请，符合法定条件的，裁定再审。不得因指令再审而降低再审启动标准，也不得因当事人反复申诉将依法不应当再审的案件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 **第二条** 因当事人申请裁定再审的案件一般应当由裁定再审的人民法院审理。有下列情形之一的，最高人民法院、高级人民法院可以指令原审人民法院再审： （一）依据民事诉讼法第二百条第（四）项、第（五）项或者第（九）项裁定再审的； （二）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是由第一审法院作出的； （三）当事人一方人数众多或者当事人双方为公民的； （四）经审判委员会讨论决定的其他情形。 人民检察院提出抗诉的案件，由接受抗诉的人民法院审理，具有民事诉讼法第二百条第（一）至第（五）项规定情形之一的，可以指令原审人民法院再审。人民法院依据民事诉讼法第一百九十八条第二款裁定再审的，应当提审。 **第三条** 虽然符合本规定第二条可以指令再审的条件，但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提审： （一）原判决、裁定系经原审人民法院再审审理后作出的； （二）原判决、裁定系经原审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作出的； （三）原审审判人员在审理该案件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判行为的； （四）原审人民法院对该案无再审管辖权的； （五）需要统一法律适用或裁量权行使标准的； （六）其他不宜指令原审人民法院再审的情形。 **第四条** 人民法院按照第二审程序审理再审案件，发现原判决认定基本事实不清的，一般应当通过庭审认定事实后依法作出判决。但原审人民法院未对基本事实进行过审理的，可以裁定撤销原判决，发回重审。原判决认定事实错误的，上级人民法院不得以基本事实不清为由裁定发回重审。**第五条** 人民法院按照第二审程序审理再审案件，发现第一审人民法院有下列严重违反法定程序情形之一的，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裁定撤销原判决，发回第一审人民法院重审： （一）原判决遗漏必须参加诉讼的当事人的； （二）无诉讼行为能力人未经法定代理人代为诉讼,或者应当参加诉讼的当事人，因不能归责于本人或者其诉讼代理人的事由，未参加诉讼的； （三）未经合法传唤缺席判决，或者违反法律规定剥夺当事人辩论权利的；（四）审判组织的组成不合法或者依法应当回避的审判人员没有回避的；（五）原判决、裁定遗漏诉讼请求的。 **第六条** 上级人民法院裁定指令再审、发回重审的，应当在裁定书中阐明指令再审或者发回重审的具体理由。 **第七条** 再审案件应当围绕申请人的再审请求进行审理和裁判。对方当事人在再审庭审辩论终结前也提出再审请求的，应一并审理和裁判。当事人的再审请求超出原审诉讼请求的不予审理，构成另案诉讼的应告知当事人可以提起新的诉讼。 **第八条** 再审发回重审的案件,应当围绕当事人原诉讼请求进行审理。当事人申请变更、增加诉讼请求和提出反诉的，按照《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二百五十二条的规定审查决定是否准许。当事人变更其在原审中的诉讼主张、质证及辩论意见的，应说明理由并提交相应的证据，理由不成立或证据不充分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九条** 各级人民法院对民事案件指令再审和再审发回重审的审判行为，应当严格遵守本规定。违反本规定的，应当依照相关规定追究有关人员的责任。 **第十条** 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不再适用。 |